

##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

### 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2. 2. 4.] [국무총리훈령 제806호, 2022. 2. 4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사무국), 044-202-2794

**제1조(목적)** 이 훈령은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 및 기능)** ①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의 개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동 소속으로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 개발 상황 점검
2.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
3.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 개발 관련 민·관 협업체계
4.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의 활용 전략
5. 그 밖에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의 개발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,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개정 2022. 2. 4.>

1.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질병관리청장, 국무조정실 차장 및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
2.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
3. 치료제·백신 등 개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觸)할 수 있다.<신설 2022. 2. 4.>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.<개정 2022. 2. 4.>

**제4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사무국의 설치·운영)**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위원회 사무국(이하 "사무국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,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.

③ 사무국의 직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,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.

**제6조** 삭제 <2022. 2. 4.>

**제7조(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·운영)** ① 코로나19 치료제·백신 등 개발에 필요한 추진과제 발굴 및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추진위원회(이하 "추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추진위원장"이라 한다)은 「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보건연구원(이하 "국립보건연구원"이라 한다)의 장이 된다.<개정 2022. 2. 4.>

④ 추진위원회의 위원(이하 "추진위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 
<개정 2022. 2. 4.>

1. 식품의약품안전처, 질병관리청, 국무조정실 및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2. 치료제·백신 등 개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.

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실무추진위원회의 전문위원회)** 추진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치료제, 백신 및 방역물품·기기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**제9조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**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사무국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2. 2. 4.>

**제11조(운영세칙)**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부칙** <제806호,2022.2.4.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